

금융학회 춘계정책심포지엄 토론자료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3) : 금융인프라를 중심으로)

KCB 김정인 전무

1. 최근 지급결제 혁신 동향과 정책과제

■ 소액결제 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편리성 제고와 더불어 FDS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성 증대

- 간편 결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결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안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
- 가트너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는 오프라인 사기보다 발생확률이 12배나 높음. 간편결제가 널리 활용되는 미국에서는 연간 약 3조원 규모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고 손실규모도 매년 커지는 추세임. → 전자상거래에서의 간편 결제는 FDS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① 소비자 보호 ② 금융자산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③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④ 외국인에 의한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자체적인 FDS를 구축할 필요 → 금융 감독당국의 FDS 구축 독려, 금융권 FDS 구축 협의체 구성, 금융보안연구원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가이드> 배포('14.8월)

■ FDS 구축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좋은 데이터, 사기관련 전문지식과 통합된 올바른 틀과 프로세스임.

- 간편 결제의 선두주자인 PayPal은 2008년 사기거래 전문회사인 Fraud Science를 인수했고, 가상계좌(에스크로), 사기거래 필터링, 결제사기 발생시 선조치, 후조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불편을 최소화. 결제사고 발생 시 전세계적으로 약 3,000명의 분쟁조정 관리인력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중재업무 수행
-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Best Practice는 좋은 데이터, 사기관련

전문지식과 통합된 올바른 틀과 프로세스로 이루어짐. 현재 국내에서는 간편결제 활성화가 강조되면서 FDS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형회사들은 자체 FDS 구축, 해외의 사기 방지솔루션 도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체들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FDS는 구축과 운영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중소형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FDS를 구축하는 금융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거나, 전환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상거래 탐지에 중요한 이용자 신상정보, 기기정보, 위치 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기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인프라가 필요

- 현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사기 거래 확정/의심자에 대한 정보 및 사기 패턴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전 금융회사 간에 공유가 되어야 사기 피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입증된 사기정보를 업권간에 공유하는 전미사기데이터베이스(National Fraud Database)가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5~9%의 더 많은 사기건을 적발하고, 사기 건을 66% 더욱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사기손실과 사기건당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함. 전미 사기데이터베이스는 2000년에 Experian과 회원사 컨소시엄이 입증된 사기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자동차, 신용카드, 보험, 모기지 대출기관, 소매업체, 통신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영국의 CIFAS(Card Industry Fraud Avoidance Service)는 1998년 소매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이후 은행, 건설조합,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30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1991년 비영리기관으로 전환. 2007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에 따라 영국 내무부가 명시하면서 공공기관도 CIFAS에 가입해 상호호혜주의에 따라 정보 공유
- 우리나라에서도 사기 정보의 공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의 금융 인프라(예를 들면 fraud bureau) 구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FDS구축 시 사기 정보공유가 전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3.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vs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 균형잡힌 시각 필요

- 연체정보, 체납정보, 개인파산 및 회생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동의면제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든 개인 신용정보는 동의를 받도록 확대됨 →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동의하겠는가? 신용활동 이전의 정보와 신용활동 이후 결과로써 생성된 정보는 성격이 다르다? 는 점 등이 감안될 필요
- 불량정보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방향 →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 PCR과 민간 CB의 공존체제 지향을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 CB사의 업무범위는 크게 위축되는 한편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폐지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PCR)의 역할이 대폭 강화됨 → PCR과 민간 CB 공존체제를 지향하는 기존 신용정보 유통 및 공유체계 내에서 역할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 PCR을 통한 신용정보의 집중이 법에 의해 강제되는 만큼 신용정보집중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설립목적을 명확하게 재설정할 필요
 - * 신용집중기구의 공공성, 중립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정책목적에 의한 신용정보의 집중대상 변경 등)



■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복합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

- 핀테크 지원,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법 개정법률안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 빅데이터를 생성/이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 → 비식별화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빅데이터의 성공요건은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복합이 가능할 때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결합 및 분석을 가능케 하는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